



## 제33차 새만금위원회, 투자진흥지구 확대 및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심의·의결

- 현대차 투자협약 이후 투자진흥지구 확대, 인프라 확충으로 지원

□ 새만금위원회는 제33차 위원회를 개최(서면회의, 3.13.~3.23)하여 ①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(안)과 ②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(안)(심의 안건)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### <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(안) : 새만금개발청 >

□ 첫 번째 안건인 ‘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(안)’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·7·8공구(6.0km<sup>2</sup>)를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, 새만금 국가 산업단지 3·7·8공구의 기업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투자진흥지구는 「새만금사업법」과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새만금지역에 도입된 경제특구로, 해당 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·소득세를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받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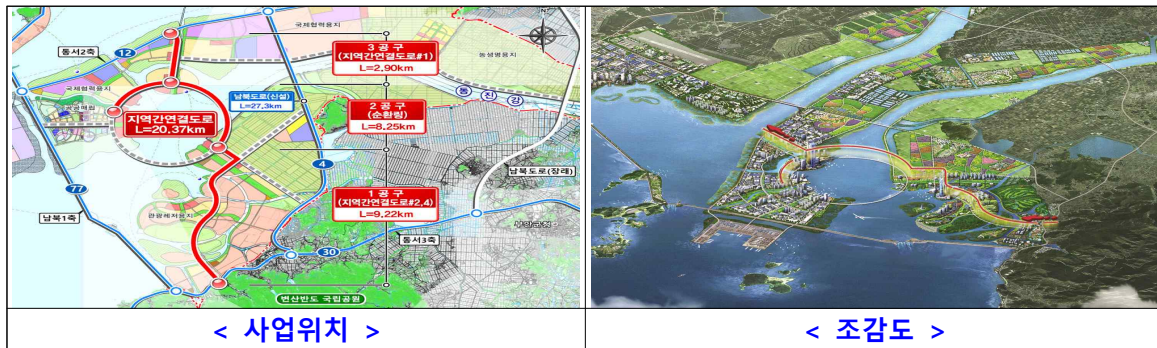
○ 지난 '23.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·2·5·6공구(8.1km<sup>2</sup>)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, LS-엘앤에프, 두산퓨얼셀, 퓨처그라프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.

□ 특히,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, AI 데이터센터, 수전해 플랜트 구축 등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지원책이다.

○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여건이 대폭 개선되어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## <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(안) : 새만금개발청 >

- 두 번째 안전인 ‘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’는 부안군 하서면 국도30호선(동서3축)에서 관광·레저용지(3권역)와 복합개발용지(2권역)를 거쳐 동서도로인 국도12호선(동서2축)을 연결하는 총사업비 1조 1330억원, 총연장 20.37km, 왕복 6차선의 내부간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.
  - 스마트 수변도시 등 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고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·남북 주 간선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도 담당한다.
  - 새만금개발청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체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누고, 동시에 건설하여 2030년 적기 개통할 예정이다.



-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핵심 거점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,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, 관광·레저용지 등 내부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### 【붙임】 안전 개요

담당 부서 <총괄> 위원회 운영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김우영 (044-200-1902)
	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	담당자	사무관 김 룡 (044-200-1906)
담당 부서 <공동> 투자진흥지구	새만금개발청	책임자	과 장 김창기 (063-733-1080)
	계획총괄과	담당자	사무관 최정필 (063-733-1082)
담당 부서 <공동> 지역간 연결도로	새만금개발청	책임자	과 장 노유진 (063-733-1180)
	기반시설과	담당자	사무관 고요한 (063-733-1192)

## 1 추진배경

### □ 추진경과
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새만금사업법」 법령 개정을 통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마련
  - \* 「조세특례제한법」 '22.12.31. 개정, '23.1.1. 시행 / 「새만금사업법」 '23.6.27. 개정, '23.6.28. 시행
- 1·2·5·6공구(8.1km)에 대해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완료('23.6.28.)

### □ 지정 필요성

-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기업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인\*으로 작용
  - \* (MOU기준)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전 10년간 8.2조원, 이후 30개월간 7.2조원
- 분양 가능한 산업용지가 부족하므로 잔여공구(3·7·8공구, 6.0km)를 신속히 매립하고 제2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기업 입주여건 마련 필요
  - \* (MOU기준) 제1호 투자진흥지구 분양률 86% ('25.12월말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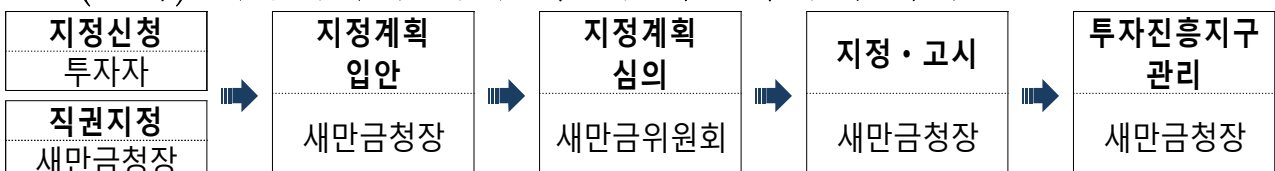
## 2 제도개요

### □ 투자진흥지구 정의 및 요건

- 해당 지구 투자자에게 법인세·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특구
  - \*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, 2년간 50%, 공유수면 점용·사용료 10년간 면제
-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5억~20억원 이상의 투자 및 10명~30명 이상의 고용 필요(제조업은 20억원, 30명 이상)

### □ 지정방법 및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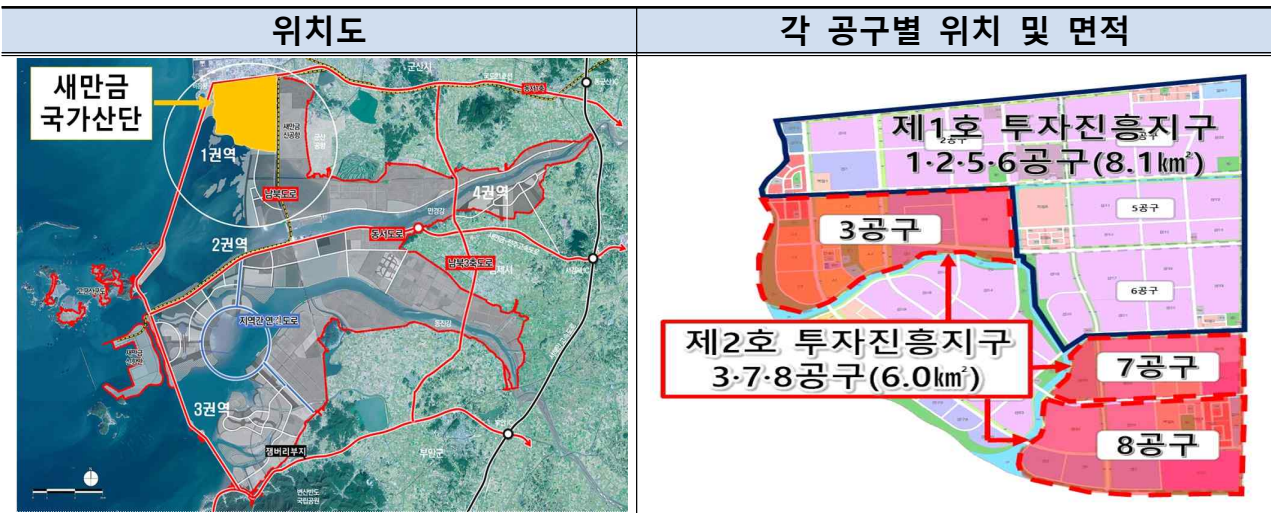
- (방법) 투자자가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거나 새만금청장이 투자촉진에 유리한 지역을 직권으로 지정
- (절차) 지정계획에 대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가 필요



### 3 제2호 투자진흥지구 지정(안)

#### □ 지정개요

- (명칭)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
- (위치)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·7·8공구(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)
- (면적) 약 6.0km<sup>2</sup> [184.5만평, 여의도(2.9Km<sup>2</sup>)의 2배]



- (지정방식) 새만금개발청장 직권지정
  - \* 개별기업이 지정 신청시 관련 행정절차에 따르는 각종 비용과 시간과다 소요 예상
- (적용시점) 새만금췌 심의 완료 후 새만금청장 지정·고시 예정('26.3월)

### 4 향후 계획

-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고시
- 투자진흥지구 지정 내용 유관기관 통보(→국세청·관세청·전북도)